혼성불일치 효과 해소관련(Action 2) 기업실체와 거래방식 사례분석

2016. 09. 23

오준석교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CONTENTS

I. 서론

II. 본론

1. OECD 모델조약의 파트너십 적용(1999)

2. OECD BEPS Action Plan 2

3. IFA General Report에 나타난 혼성실체사례

II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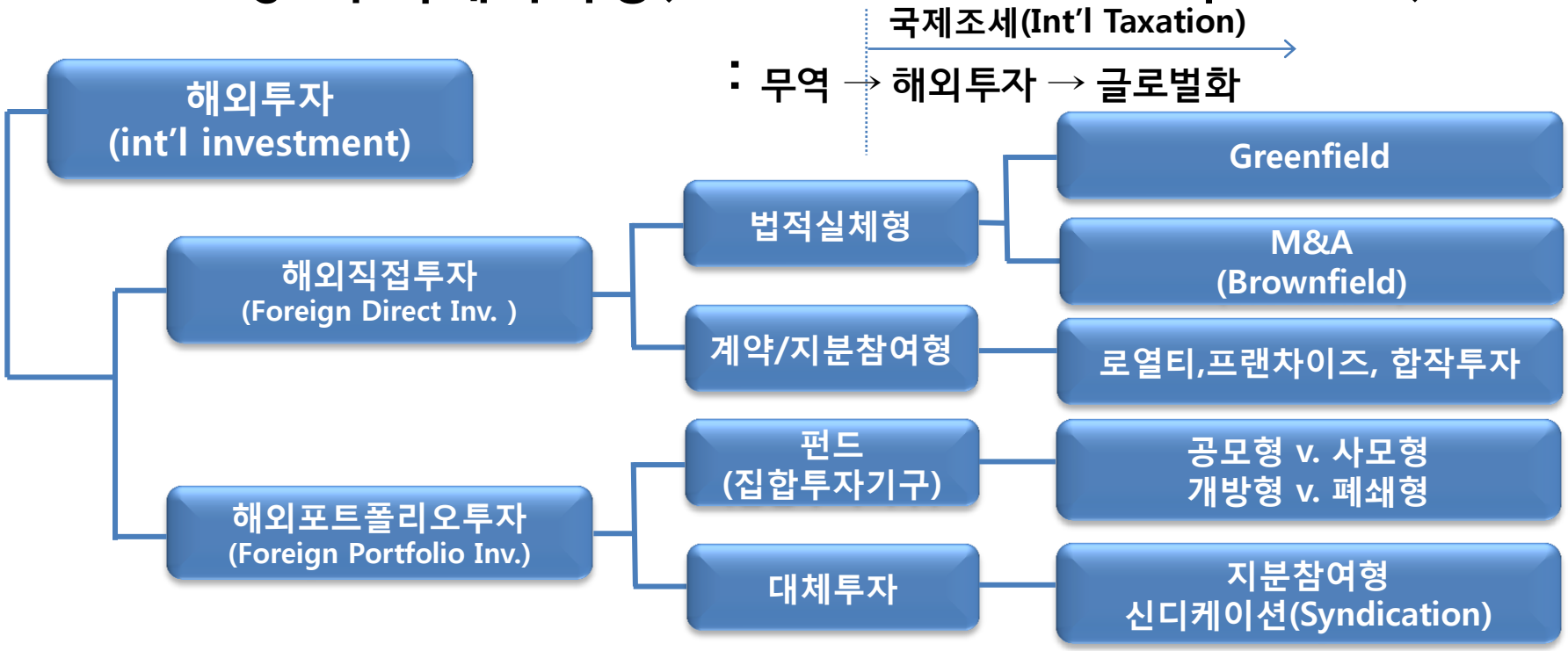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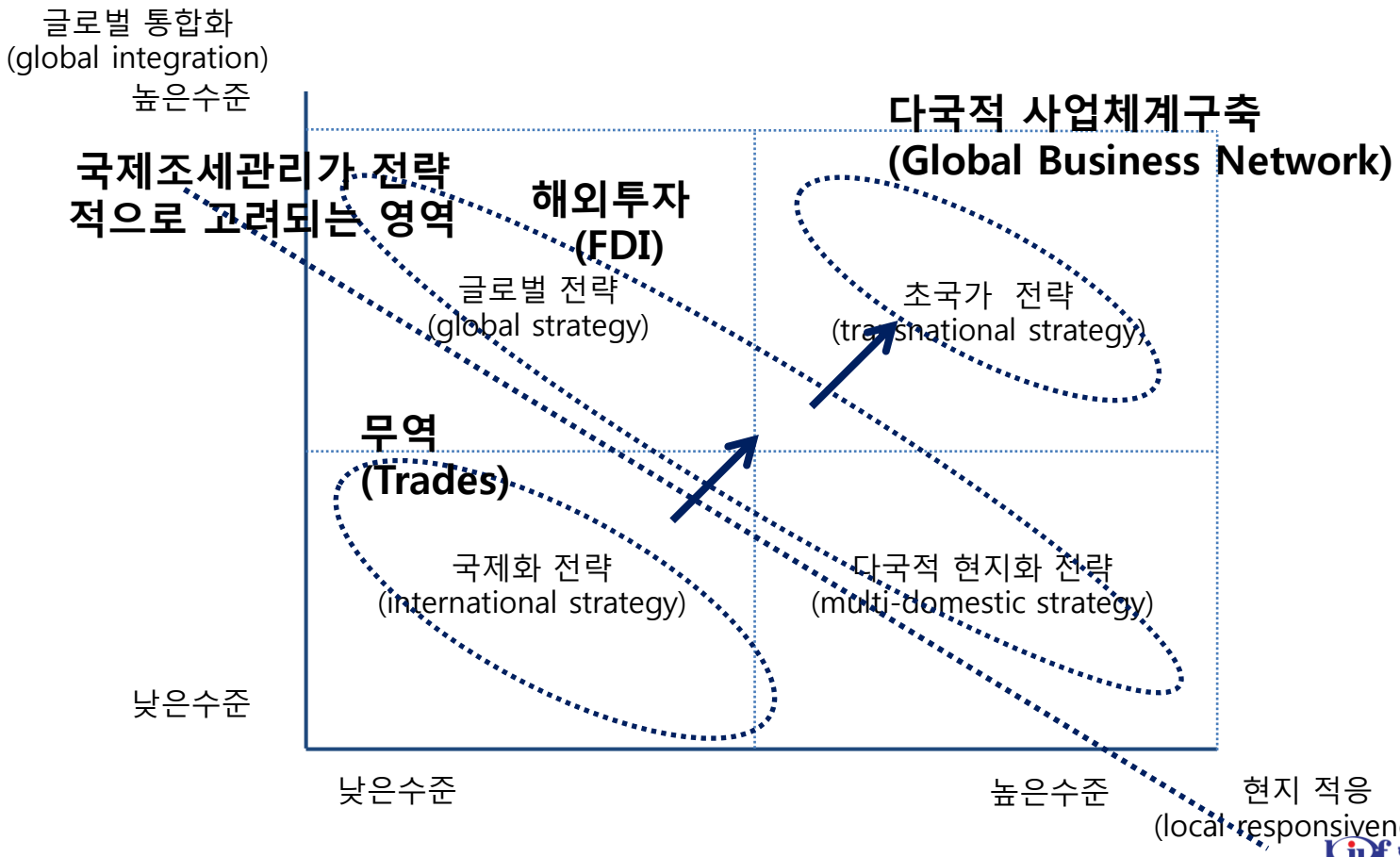
01 국제조세전략의 3대 차익거래(arbitrage transactions)

1. 해외투자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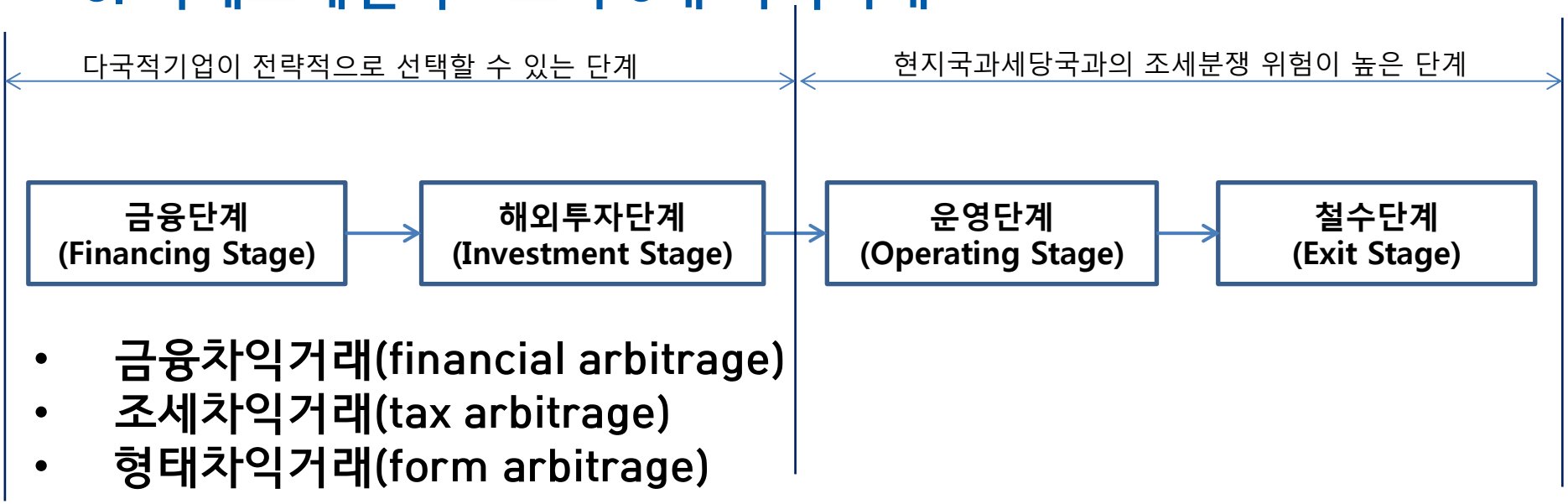
- Cauvsgil의 국제화과정(internationalization process)



2. 국제경영전략(Bartlet &Ghosal)



3. 국제조세전략으로서 3대 차익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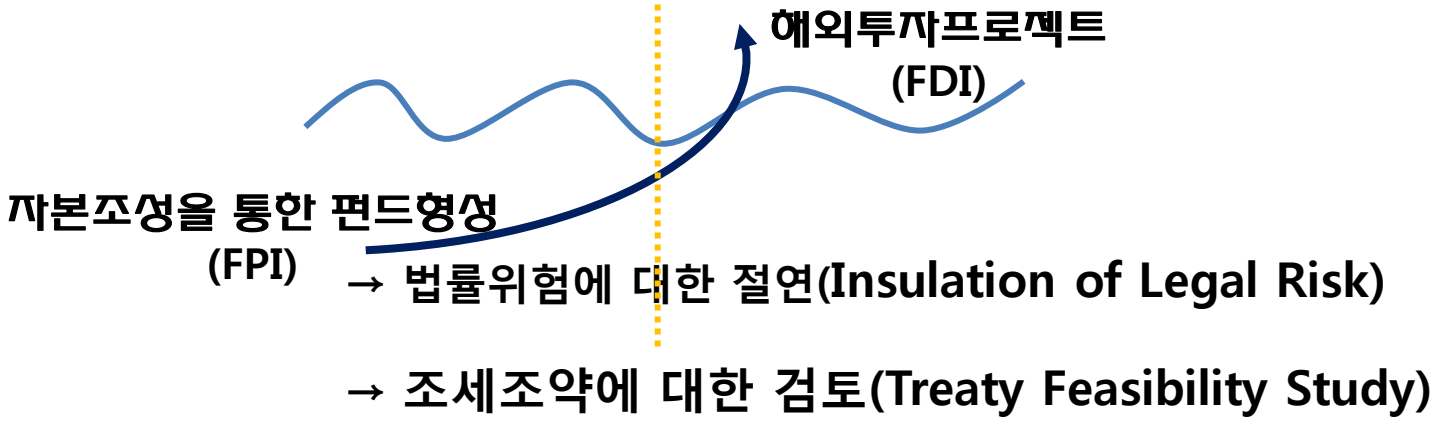


- 금융차익거래(financial arbitrage)
- 조세차익거래(tax arbitrage)
- 형태차익거래(form arbitrage)

- 국제재무전략 : 국가간 자본시장의 가격차이를 활용한 금융차익거래 (financial arbitrage) → 금융단계(financing stage)에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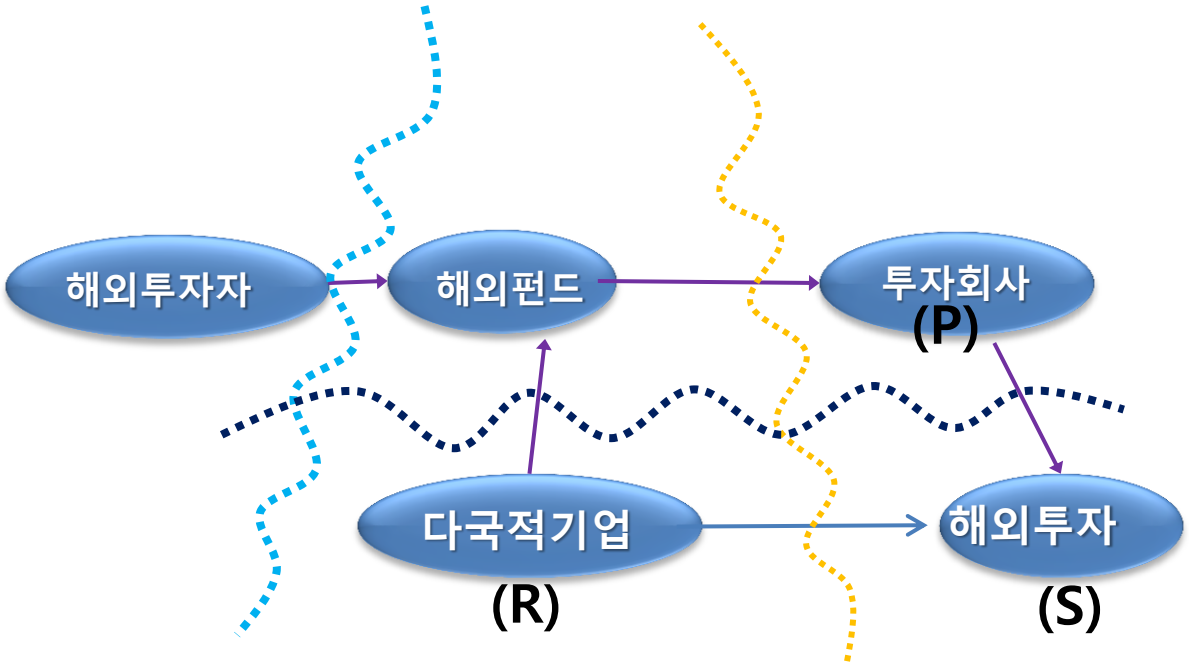
- 국제조세전략: 국가간 세제 및 세율차이를 이용한 조세차익거래 (tax arbitrage) → 입지선정단계(anchor analysis)에서 검토

- 글로벌경영에 따른 해외투자규모가 커지고,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해외포트폴리오 투자가 연결되는 추세



- 이에 따라 국제조세전략은 조세차익거래에 진출하는 형태(form)를 거주지국(R; Resident Country), 원천지국(S;Source Country),그리고 투자회사가 만들어진 본국 (P;Parent Country)

다국적기업 경영의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투자를 통한 진입형태(form)가 다양화되고, 전략적으로 고려되고 있음 →진입단계에서 형태차익거래 (form arbitrage) 검토



02 혼성실체(hybrid entity)의 전략적 활용

혼성실체(hybrid entity)

-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가 해외직접투자와 해외포트폴리오 투자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해외포트폴리오 투자가 연속선상에서 국제조세전략적으로 관리**되는 추세임.

- 국제조세환경에서의 회색지대(gray area)를 해외투자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레버리지로 확보하고자, 자본을 조성하는 금융단계와 진입단계에서 **혼성실체(hybrid entity)를 통한 조세회피(tax avoidance)가능성**에 대해 검토함.

- **혼성실체(hybrid entity)**는 사업실체(business entity)가 해외투자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천지국(S), 본국(P), 그리고 거주지국(R)에서 과세실체(taxable entity)에 대한 판단이 둘 이상의 나라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03 혼성불일치해소를 통한 인위적 조세회피 방지

OECD BEPS Action Plan

- 다국적기업들이 거주지국(R)또는 원천지국(S)에서 수행한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을 제 3의 저세율국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세원(tax base)을 잠식시키는 현상을 BEPS라고 한다.

- BEPS 프로젝트는 15개의 Action Pla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외투자를 기획하는 금융단계와 진입단계에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혼성실체(hybrid entity)가 오랫동안 활용되었기 때문에, Action 2에서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OECD에서는 BEPS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이전에도, OECD 조세모델조약에 파트너십이라는 혼성실체를 통한 조세회피를 해결하고자 『The Application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to Partnerships』 을

발간하였다.(앞으로 “OECD 파트너십 조약”으로 언급함)

- 또한, 최근에는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ltion;IFA) 2014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General Report를 통해 혼성실체와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사례를 유형화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Lang, Michael and Claus Staringer, “General Report,” Cahiers 2014 Mumbai Congress,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vol.99b

-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전략 수립의 관점에서 혼성실체와 거래에 대한 여러 유형과 논의를 정리하고, 현재까지 나타난 대법원 판례들을 해석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 법인세법 등에 대한 입법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본론



01. OECD 파트너십 조약에 나타난 혼성실체의 유형

OECD 파트너십조약(The Application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to Partnerships)

- OECD는 199년 파트너십이라는 조세투과실체를 OECD 모델조약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일종의 모델조약에 대한 시행세칙으로서 파트너십조약을 발표.

- OECD 파트너십조약에서 말하고 있는 'partnerhsip'은 해외투자과정에서 조세적으로 투과되는 실체(flow-through entity 또는 transparent entity)를 의미하는 폭넓은 의미이며, 구체적인 파트너십을 한정하는 것은 아님.

- 다른나라에서 조세투과실체가 원천지국에서 법인과세실체가 되는 경우가 혼성실체의 사례에 해당되며, 이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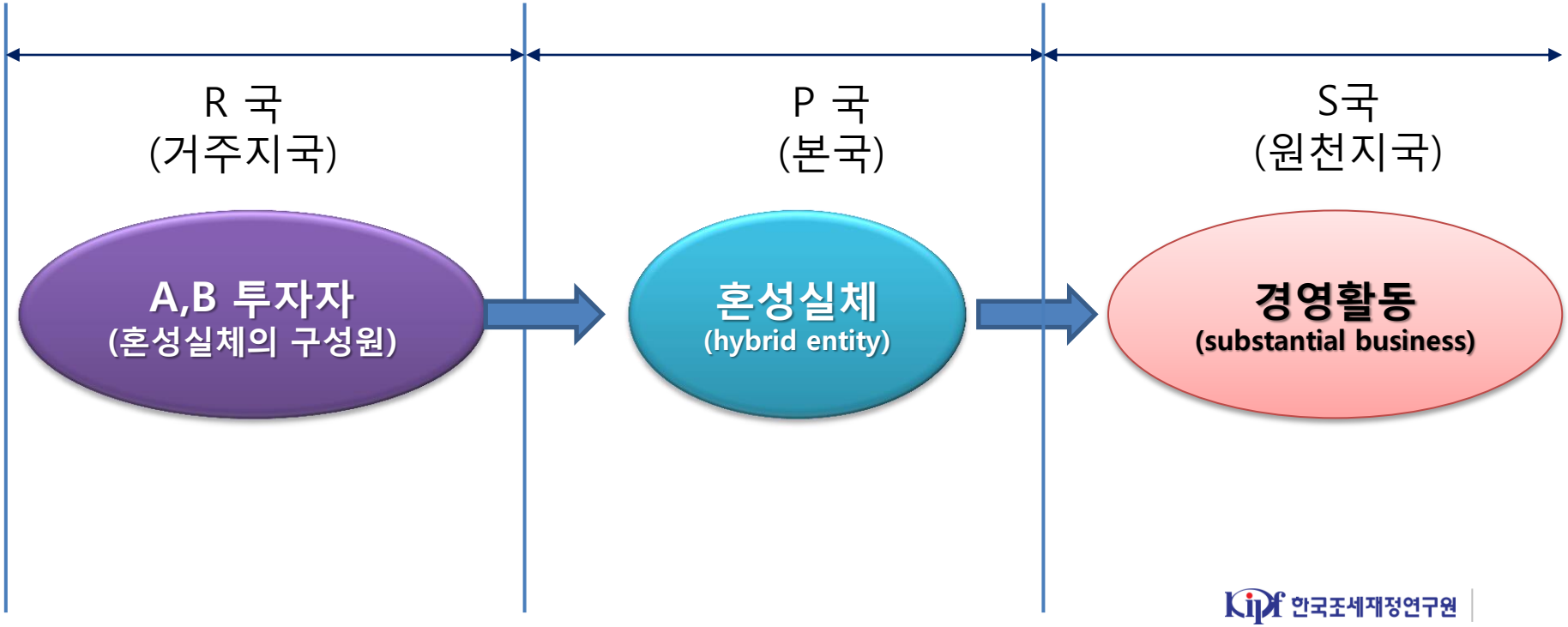
가 되는 경제적 이중과세(economic doubel taxation) 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

- OECD 파트너십조약은 해외투자가 혼성실체의 형태로 적용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국적 기업의 해외투자가 예측가능한 조세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 뒤에 다루고 있는 OECD BEPS 프로젝트와 성격상의 차이가 있음.

- OECD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활동으로 인하여 혼성실체를 통한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과세권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임.

OECD 파트너십 조약에 나타난 혼성실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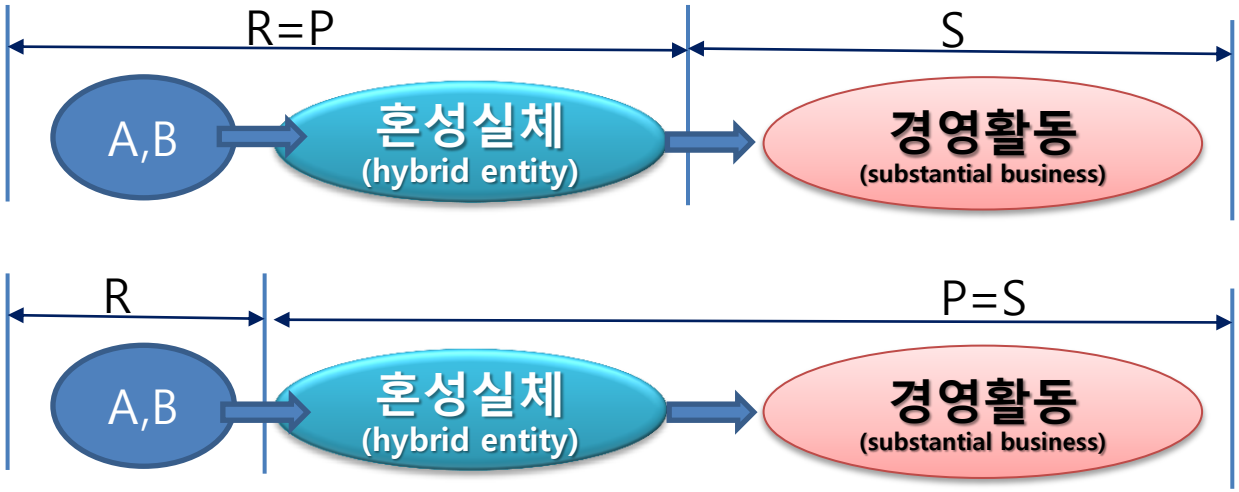
- OECD 파트너십조약에서는 모두 18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혼성실체 또는 거래와 관련된 사례(Examples)는 1~10 이 주된 사례이며, 추가적으로 16,17사례도 혼성실체 과세문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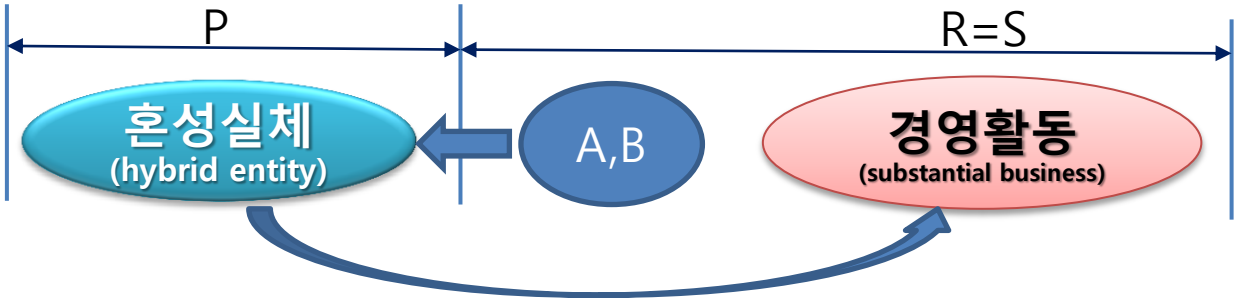
- 혼성실체의 본국(P)이 R,S와 겹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에, 이중과세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 사례는 크게 2개국 사례와 3개국 사례로 구분할 수 있음.

  - **2개국 사례(Bilateral Exampl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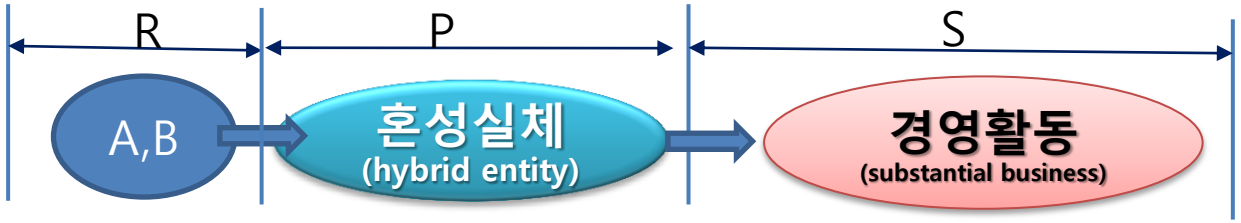
    1) P 국이 R 이나 S와 일치하는 경우(P=R, 또는 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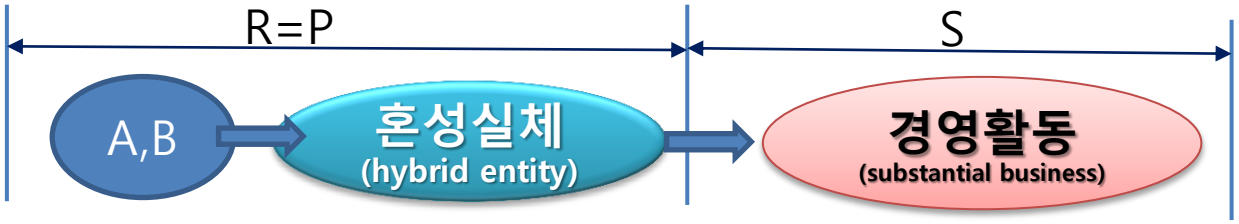
2) R국과 S국이 일치하는 경우(P/ R=S)



●3개국 사례(Triangular Example) :



사례 1



- 혼성실체(H)를 S국이나 R(=P)국에서 모두 과세투과실체(T)로 보는 경우
  - S국은 혼성실체(H)를 투과하여, 구성원인 A,B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S국과 R국간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 혼성실체(H)가 S국에서는 과세실체(O), R국에서는 투과실체(T)로 보는 경우
  - OECD 파트너십 조약에서는 S국은 R국의 판단을 따름

02 OECD BEPS Action Plan에서의 혼성불일치 해소

- OECD 파트너십조약에서는 혼성실체(hybrid entity)의 이중과세(double taxation)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의 적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비해,

- OECD BEPS 프로젝트에서는 혼성거래(hybrid transaction)의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를 통한 인위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권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OECD Action Plan 2에서 조세차익거래를 활용한 거래 유형으로는 크게 1) 손금산입/익금불산입(D/NI)유형과 2) 손금산입/손금산입(D/D)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사례 1: 손금산입/익금불산입(D/NI)

- 사례 1은 다시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 사례 1-1 : 국내혼성실체가 구성원에게 소득지급
  - 사례 1-2: 국내소득지급자가 해외의 혼성실체에게 소득지급

- 지급액이 지급인 소재 과세관할에서 공제되는 것을 부인하는 방안을 권고.
- 만약, 지급인 소재국에서 불일치 제거를 위한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취인의 과세관할이 지급인의 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수취인 과세관할에서 경상소득에 포함하도록하는 방어규정(defensive rule)제시

◆사례 2 손금산입/손금산입(D/D)

- 모법인의 과세관할에서 지급액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것을 부인하는 방안을 우선방안(primary response)으로 제시
- 모법인 과세관할에서 우선방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어규정(defensive rule)으로 지급인의 과세관할이 공제를 부인할 것을 권고

◆OECD BEPS 프로젝트에서는 거래가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이루어진 경우 또는 구조화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inking rule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OECD BEPS Action Plan2 에서 권고한 혼성불일치 문제의 해소방안 제안

◆Part 1 : 국내세법에 대한 권고사항

- **국가간 세법상 취급이 상이하여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 1차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에서 과세(손금불산입) 원칙
  - 지급하는 국가에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네는 2차적으로 소득을 수령하는 국가에서 과세(익금산입)

- **혼성불일치 거래효과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best practice)**
  - 지급국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액은 배당소득 면제대상에서 제외

- 피지배외국법인(CFC) 제도 도입 및 강화
- 혼성실체 소재지에서 당해 실체에 대해 거주자로 취급하여 과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사항으로 제시

Part 2: 조세조약 개정사항에 대한 권고

- **개인이 아닌 단체가 양체약국에서 모두 거주자인 경우, 체약국 간 상호합의를 통해 과세할 국가를 결정하여 이중비용공제 방지**

03 IFA General Report에 나타난 혼성거래 사례

-작성중에 있음

04. 국제조세측면에서의 과세쟁점

- OECD BEPS 프로젝트와 각국의 입법례 검토

- 대법원판례
  - 실질과세원칙 : 로담코판결,라살레 판결
  - 혼성실체의 발생원인 : 론스타판결
  - 혼성실체와 실질귀속자 판단: 위니아 만도, SC판결
  - 혼성실체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동원판결

각국의 입법례와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여, 국제조세 측면에서의 혼성실체와 거래의 불일치에 대한 국제조세측면에서의 과세쟁점 도출

Ⅲ 결론



01. Linking Rule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

OECD BEPS의 기본적인 입장은 Linking rule 도입

- 덴마크,영국, 멕시코 가가 현재 linking rule을 도입 하였는데, 대부분 내국법인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덴마크는 특히 적용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국내실체의 세법적 성격을 변경

  - 이월결손금의 처리나, 자산,부채의 승계등에 있어서 세법이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

02. 미국의 check-the-box-rule의 도입

Entity classification의 문제

- 외국실체에 대한 분류는 결국 외국실체에 들어가는 소득의 귀속문제 (attribution)

- 소득귀속자의 결정문제

03. 세법및 조세조약개정에의 제안

감사합니다

